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법령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신설한다.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7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와 공급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중앙 사회서비스원-----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연 락 처	(044) 202 - 3259